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085

발의연월일: 2023. 2. 17.

발 의 자: 어기구・위성곤・오영환

이개호・박광온・주철현

박상혁 • 김승남 • 이형석

허종식 · 송옥주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·개발·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하고 있음.

공단은 2021년 4월 유사기관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되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, 어선 및 어업 등 다른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법에 따른 위탁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업생산성 증대 및 공단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어촌의 경제·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, 같은 항 제6호 및제7호 각각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제3항제4호 중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"를 "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공공기관이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 ①	제55조의2(한국수산자원공단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	3
을 수행한다. 다만, 취수시설	
(「수도법」 제3조제7호 및 제	
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	
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	
다)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(流	
下距離) 20킬로미터 이내에서	
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	
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	
협의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	4
하여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</u>	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
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	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
하는 사업(제3조제5호에 따	한 법률」 에 따른 공공기관
른 「내수면어업법」의 내수	<u>o]</u>
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	
한다)	
	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
<u> <신 설></u>	6.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
	<u>행할 수 있는 사업</u>
<u><신 설></u>	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
	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
	로 정하는 사항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